##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501

발의연월일: 2022. 7. 18.

발 의 자:류성걸·권성동·김상훈

박수영 • 박정하 • 배준영

서일준 · 성일종 · 이인선

정운천 · 조은희 · 최승재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해당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한도를 원리금 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따른 금액을 합하여 300만원까지로 하고 있음.

해당 조문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 비율과 한도 금액은 2000년도에 개정된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현재 부동산 주택임대차 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고물가, 금리인상,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여파 등 민생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안정을 높이기 위해 공제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한도를 현행 300 만원에서 420만원으로 120만원 인상하고, 소득공제율 또한 100분의 50 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안 제52조제4항). 법률 제 호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 본문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항단서 중 "300만원"을 "420만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제2조(특별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 ③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	4
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	
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	
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	
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	
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
우에는 그 금액의 <u>100분의 40</u>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
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
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
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⑤ ~ ⑪ (생 략)

<u>100분의 50</u>
<u>420만원</u>
⑤ ~ ⑪ (현행과 같음)